

# 고 창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군 보

제647호 2022. 4. 01.(금)

선 람	기관(부서)의 장

## 【규 칙】

- 고창군의회 규칙 제1196호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 1

## 【훈 령】

- 고창군 훈령 제499호 고창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정 폐지규정 6

## 【고 시】

- 고창군 고시 제2022-42호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7

## 【공 고】

- 고창군 공고 제2022-548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8

회 람									
--------	--	--	--	--	--	--	--	--	--

발행 고 창 군(편집 기획예산담당관 ☎ 063-560-2326)



제28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2022.02.25.)에서  
의결된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창군의회 의장

2022년 3월 일

고창군의회 규칙 제1196호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의정팀과 의사팀을”을 “의정팀, 의사팀과 홍보팀을”으로,  
“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를 “팀장은 일반직 6급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문서, 홈페이지”를 “문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담당에”를 “팀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임시회, 간담회”를 “임시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  
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간담회 개최

④ 홍보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홍보계획 수립
2. 의회, 의원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3. 의회 간행물(의정백서·안내책자), 사진촬영, 자료실 관리에 관한 사  
항

4. 홈페이지 관리

5.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중 “제공”을 “검토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료 수집·조사·분석·연구

8. 정책지원관 관리 및 분장업무 검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 ①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②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③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④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⑤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⑥ 성명서, 건의·결의문, 5분 자유발언 등을 위한 자료제공 및 문안 작성
- ⑦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회사무과) ① 사무과에 의정팀과 의사팀을 두며, 각 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한다.</p> <p>② 의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p>1. · 2. (생략)</p> <p>3. 청사, 장비, 문서,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p> <p>4. ~ 6. (생략)</p> <p>7. 의장 축·대회사 작성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타 담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p> <p>③ 의사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p>1.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소집 및 진행 보조에 관한 사항</p> <p>2. · 3. (생략)</p> <p>4. 의회, 의원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p> <p>5. 의회 간행물, 사진촬영, 자료실 관리에 관한 사항</p>	<p>제2조(의회사무과) ① ----- 의정팀, 의사팀과 홍보팀을-- 팀장은 일반직 6급으로-----.</p> <p>②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문서 ----- -----</p> <p>4. ~ 6. (현행과 같음)</p> <p>7. 간담회 개최</p> <p>8. ----- 팀에 ----- -----</p> <p>③ ----- ---</p> <p>1. ---- 임시회 ----- -----</p> <p>2. · 3.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6. (생략)

<신설>

제3조(전문위원) ① (생략)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1. (생략)
-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
- 3. 위원회에서 의결한 각종 결의사항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 4. ~ 6. (생략)

<신설>

4.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홍보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1. 의회 홍보계획 수립
- 2. 의회, 의원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 3. 의회 간행물(의정백서·안내책자), 사진촬영, 자료실 관리에 관한 사항
- 4. 홈페이지 관리
- 5.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 2. -----  
-----  
-----검토처리
- 3. -----  
-----검토처리
- 4. ~ 6. (현행과 같음)
- 7. 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료 수집·조사·분석·연구

<신 설>

7. (생 략)

<신 설>

8. 정책지원관 관리 및 분장업무 검토

9. (현행 제7호와 같음)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 ①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②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③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④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⑤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⑥ 성명서, 건의·결의문, 5분 자유발언 등을 위한 자료제공 및 문안 작성
- ⑦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고창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정 폐지규정을 발령한다.

고 창 군 수

2022년 3월 30일

고창군 훈령 제499호

## 고창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정 폐지규정

고창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고창군고시 제 2022 - 42호

##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0일

### 고 창 군 수

1. 고 시 명 :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지 정 : 고창군 고창읍 노동리 산7 외 10필지
3. 고시내용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4. 고시일자 : 2022. 3. 30.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가.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나.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6. 열람 및 문의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고창군 산림공원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고창군 산림공원과 (063-560-25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조서 1부.(고창군 산림공원과 비치)

고창군 공고 제2022-548호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중인 『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고 창 군 수

2021년 03월 28일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2. 관련 법규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 3.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나. 공사기간 : 2021. 11. 10. ~ 2023. 11. 09. (24개월)

다. 공사위치 :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산수리, 무송리 일원

라. 시 공 자 : (주)금도건설

마. 공사내용 : 오수관로 L=12km, 맨홀펌프장 7개소, 배수설비 224

바. 정기안전점검 개요

① 점검종류 및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사현장 정기안전점검

② 점검시기 : 세부일정은 시공사와 협의

③ 점검대상 및 비용

점검대상		규 모	용도	점검회수	점검비용
가설 구조물	H-PILE	높이 2M이상	맨홀, 하수관로	• 점검 : 각 2회 (점검일지제출) • 보고서 : 1차보고서 2차보고서 종합보고서	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4,607,000 (부가세포함)
	SHEET PILE	높이 2M이상	맨홀, 하수관로		
	조립식 흙막이	높이 2M이상	맨홀, 하수관로		

※ 해당공사의 공사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변경에 따른 점검비용은 변경 없음.

#### 4. 신청자격

- 전라북도 소재 업체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토목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중 1개 분야 이상) 자격을 소지한 업체

#### 5. 정기안전점검 업체 결정방법

가. [별첨1]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지정할 예정임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50점	
점검비용	50점	
합 계	100점	

- 나.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됨.
-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지정 결정이 취소되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됨.
- 라.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 6. 신청서류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2.04.07.(목) 09:00 ~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74-12, 상하수도사업소)

다.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 4) 서약서 1부 [서식4]

## 7. 개찰통보

- 2022.04.12.(화) 선정업체만 통보

##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1.04.13.(수) 10:00 ~ 17:00까지

나. 열람방법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 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063-560-8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사업명	부안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직무분야	수리분야 [ ] 교량 및 터널분야 [ ] 항만분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3. 서약서 1부 [서식4]	수수료  없음
----------------------	---	---------------

## [서식2]

##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평 가 항 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 참여 기술인	51	소 계	51
		· 특급기술자: 5점 × 인원	20
		· 고급기술자: 4점 × 인원	16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9
		· 초급기술자: 2점 × 인원	6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40	소 계	40
		· 토목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30
		· 토목공사장 외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10
3. 점검·진단 평가결과	4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4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 A- 이상	5
		· BBB- 이상	4
		· BB- 이상	3
		· B- 이상	2
		· CCC+ 이하	1
		· 미제출	0
총 계	100	평점 : 평가점수 × 50%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토목분야에 한함.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토목공사장 및 기타 정기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사업명	부안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부가세포함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 [별첨1]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 &lt;사업수행능력&gt;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 참여 기술인	51	소 계	51	
		· 특급기술자: 5점 × 인원	20	
		· 고급기술자: 4점 × 인원	16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9	
		· 초급기술자: 2점 × 인원	6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40	소 계	40	
		· 토목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30	
		· 토목공사장 외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10	
3. 점검·진단 평가결과	4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 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4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 A- 이상	5	
		· BBB- 이상	4	
		· BB- 이상	3	
		· B- 이상	2	
		· CCC+ 이하	1	
		· 미제출	0	
총 계	100	평점 : 평가점수 × 50%		

1.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토목분야에 한함.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토목공사장 및 기타 정기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 &lt;수행가격&gt;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제안가격	5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50점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 48점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 46점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 44점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 42점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 40점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 38점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 36점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 34점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 32점	

1.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5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6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제안가격은 제외)

2.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함

4. 제안가격 상한률 : 점검비용의 110.0%

(제안가격 최고가 : 20,090,000원 × 110.0% = 22,099,000원)

5. 제안가격 하한률 : 점검비용의 87.745%

(제안가격 최저가 : 20,090,000원 × 87.745% = 17,627,970원)

※ 제안가격이 하한률 미만 또는 상한률 초과 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준	심사방법
수행능력	50점	
수행가격	50점	
합 계	100점	